

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[2017. 3. 31 조례 제738호]

일부개정 2018. 12. 14 조례 제 839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23. 7. 28 조례 제1099호
(만 나이 개정 및 「정부조직법」 개편에 따른 「증평군
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라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7. 28>

1. “청년”이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년일자리 창출”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·보급·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중 증평군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
2.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
3.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에 대한 사항
4.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
5. 공공기관·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

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

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·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추진 및 지원)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직업상담·적성검사,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
2. 구인·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
3.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
4.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
5.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
6.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지원
7.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기관·단체 등과의 협약체결)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, 기업 등과의 청년 취업 지원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9조(행·재정적 지원)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4>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·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12. 14 조례 제839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7. 28 조례 제1099호, 만 나이 개정 및 「정부조직법」 개편에

따른 「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